

파주시 청소년상담실 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495
----------	-----

제출년월일 : 1999. 7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청소년기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정신건강, 학습, 진로 문제 등에 관한 생활고충을 상담 처리하고 청소년들의 자아성장, 개발 등을 돕기위한 청소년 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청소년 상담실의 위치 및 운영주체 명시(안 제2조, 제3조)
- 나. 청소년 상담실의 기능(안 제6조)
- 다. 청소년 상담실 상담요원 자격 및 상담요원 임용(안 제8조, 제9조)
- 라. 청소년 상담실 운영협의회 구성(안 제11조)
- 마. 청소년 상담실 상담요원의 복무(안 제12조)
- 바. 청소년 상담실 상담요원의 보수 및 수당규정(안 제13조)
- 사. 청소년 상담실 운영방법(안 제16조)

파주시 청소년상담실 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정신 건강, 학습, 진로문제 등에 관한 생활고충을 상담 처리하고 청소년들의 자아 성장개발 등 지역내 상담 사업을 수행하기위해 청소년 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상담실의 명칭은 파주시 청소년 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 이라한다.

제3조 (위치) 상담실은 파주시 아동동 215번지 파주시청 내에 두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전할 수 있다.

1. 청소년 관련시설 확보시
2. 위탁운영시 수탁단체에서 시설을 확보했을때
3. 기타 상담실 이전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

제4조 (운영) 상담실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제5조 (기능) 상담실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상담사업 계획수립 및 집행
2. 상담기법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 대상 상담관련 프로그램운영
4. 부모교육, 교사, 청소년 관련 지도자등 성인대상 상담관련 프로그램운영
5. 지역내 청소년 관련기관, 단체와 상호협력 강화로 상담사업 활성화 추진
6. 지역내 각종 청소년 관련 정보제공 및 자료수집

제6조 (상담실운영요원) 상담실에는 상담원, 행정원(상담보조원)을 두며 필요시 상담실장, 상담부장(전임상담요원)을 둘 수 있다.

제7조 (상담실 운영요원의 자격) ① 운영요원의 자격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신규임용시 연령은 상담실장, 상담부장(전임상담원)은 40세이하, 상담원은 35세이하, 행정원(상담보조원)은 30세 이하로 한다.

제8조 (상담실 운영요원의 임용) ① 대학, 청소년단체, 유관기관 및 협회 등에서 추천한자와 개별지원자를 중심으로 공개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선발 과정에서 적격자 부족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특별 채용할 수 있다.

② 상담요원의 선발을 위하여 청소년상담실 인사 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파주시 인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③ 상담실장·상담부장 및 상담원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장이 임명하고 행정원(상담보조원)은 청소년 담당국장이 서류심사와 면접을 실시하여 결정한다.

제9조 (상담실운영요원의 신분) ① 상담실 운영요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정년은 상담원은 만 58세, 행정원은 만 57세로 한다.

제10조 (운영협의회) ①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상담실 운영계획 및 운영사항 심의 조정
2. 지역내 청소년상담관련 정보 교환
3.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등 전문분야에 대한 검사진단 및 치료
4. 상담실 운영에 따른 협의 및 상담사업 실적 평가 등

② 협의회 위원은 지역내 상담관련 전문가, 청소년 관련분야인사, 공무원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③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상담원중에서 선임한다.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책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회의는 년2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상담요원의 복무) ① 근무시간은 다음 각호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제2장 근무시간등의 규정에 의한다.

1. 일반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의하며 필요시 별도로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다.

2. 휴일은 국경일, 정부가 공휴일로 정한날, 근로자의 날, 기타 정부 또는 상담실이 임시 휴무일로 정한날로 한다.

② 휴가는 다음 각호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제3장 휴가 규정에 의한다.

1. 월간 통상근무일수를 개근한자는 1일의 월차휴가를 실시 할 수 있다.

2. 월차휴가와 별도로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제 직 기 간	연 간 일 수
3월이상 6월미만	4
6월이상 1년미만	5
1년이상 2년미만	6
2년이상 3년미만	7
3년이상 4년미만	8
4년이상 5년미만	9
5년이상 6년미만	10
6년이상	11

제 12조 (상담원의 보수) 상담실 운영요원의 보수는 당해년도 문화관광부의 청소년 상담실운영 지침에 의하며 규칙으로 정한다

제 13조 (상담실 운영시간) 공무원 근무시간에 의하되 야간운영시에는 9시부터 21시까지로 하고 토요일 전일근무 실시시에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제 14조 (검사료) ① 각종 심리검사의 경우 필요시 검사지 구입비용등 실비를 징수 할 수 있으며, 검사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징수된 금액은 상담실 운영사업비에 한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제 15조 (상담실운영방법) ① 상담실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시장은 청소년단체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시 시장은 위탁단체의 조건, 선정방법등을 정하여 선정 위탁하여야 한다.

③ 상담실 운영은 도비보조 및 시비로 운영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담실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 16조(징계등) 상담실 운영요원이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복무사항의 불이행 또는 품위를 손상시키는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절차 및 약정기준에 따라 징계조치한다.

제 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상담실 운영요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별표1】

○ 상담실 운영요원의 자격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상담실장	• 대학원의 상담분야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등】 박사학위 이상 취득후 상담 관련 실무에 2년 이상 경력이 있는자 • 대학원의 상담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상담관련 실무에 5년 이상 경력자 •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자
상담부장 (전임상담원)	• 대학원의 상담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 대학원의 상담관련분야 석사학위이상 취득자로서 상담관련 실무에 3년이상 경력이 있는자
상담원	• 대학원의 상담관련분야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등】 석사학위이상 취득후 상담업무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 • 4년제 대학 졸업후 상담관련 실무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사회봉사 단체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있는 사람으로서 청소년 보호·육성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이 있는 자중 시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행정원 (보조상담원)	• 고졸 이상자로서 행정 또는 상담보조업무 수행가능한 사람으로서 전산 또는 wp 3급이상 자격을 소지한 사람 •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워드가능자